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1-22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1. 04. 04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회

1. 제안이유

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의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·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강화 등 지역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아동·여성폭력의 사전 예방과 보호·치료 등으로 아동·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.
- 나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함 (안 제4조).
- 다.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야함 (안 제5조)
- 라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함 (안 제7조)
- 마. 아동·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4조)

3. 제정근거

- 가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다.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 (소관부서와 협의완료)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나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- 다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학교폭력, 유괴 및 실종 등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,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,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역연대의 설치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,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8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3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
4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5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 기관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·여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
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·추진 및 점검
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
3. 위기 아동·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
4. 지역 내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
5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, 그 사무를 총괄 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의한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1. 2. 5] [법률 제10038호, 2010. 2. 4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10261호, 2010. 4.15, 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

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10261호, 2010. 4.15. 타법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